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제출) 일자	심사경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2200347)	2024. 6.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 안전위원회(‘24.9.2.) 상정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김선교의원 (2200818)	2024. 6. 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 안전위원회(‘24.9.2.) 상정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엄태영의원 (2203191)	2024. 8.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 정안전위원회(‘24.11.20.) 상정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양부남의원 (2212230)	2025. 8. 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 정안전위원회(‘25.11.12.) 상정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최기상의원 (2212860)	2025. 9.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2.)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위성곤의원 (2213949)	2025. 11. 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2.5.) 제433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6.3.24.) 상정,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24.)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제7호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휴직) ① (생 락)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4호</u>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 <u>제4호</u> 및 <u>제4호의2</u> ----- ----- -----.
1. ~ 3. (생 락)	1. ~ 3. (현행과 같음)
4.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u> <u>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u>12세</u> ----- <u>6학</u> <u>년</u> ----- ----- -----
<u><신 설></u>	<u>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u> <u>된 때</u>
5. ~ 7. (생 락)	5. ~ 7.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 제3호 및 <u>제2항제</u> <u>4호</u>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 항을 적용한다.	③ ----- ----- <u>제2항 제</u> <u>4호 · 제4호의2</u> ----- -----.
④ 임용권자는 <u>제2항제4호</u> 에	④ ----- <u>제2항 제4호</u> 및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 ~ 10. (생략)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 · 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 ·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 · 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u>제4호의2</u>----- -----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휴직 기간)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 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 ----- --<u>제2항제4호 · 제4호의2</u>----- -----<u>제7호 · 제7호의2</u>----- -----. ② ----- ----- -----<u>제2항제4호 · 제4호의2</u>----- ----- -----<u>제7호 · 제7호의2</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